

「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원섭 의원

2. 찬 성 자: 김근한 의원 외 6인

3. 제안이유

-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, 시장의 책무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사후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5조에서,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, 사업 완료 이후에도 도시재생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안 제6조에서는, 2년마다 사후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, 선순환적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음.
- 관내 도시재생사업¹⁾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다만,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과 「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연계·운용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1) 관내 도시재생사업 현황 : 완료(원평동), 진행중(선주원남동, 금오시장, 선산)